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및 발의경과

- 의안번호 : 1938
- 발 의 자 : 문영민의원외 12명
- 발 의 일 : 2017년 7월 24일
- 회 부 일 : 2017년 7월 27일

2. 제안이유

- 장례문화의 실소요일수 충족과 근무사기 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조사 휴가 중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함
(안 제24조제1항의 별표 3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다. 입법예고 (2017. 8. 1. ~ 8. 8.) 결과 : 의견 없음.

5. 검토 의견

- 개정조례안은 일·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조사 휴가 중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휴가일수를 확대(3일 ⇒ 5일)하려는 것임.

현 행			개 정 안		
[별표 3] 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4조제1항 관련)			[별표 3] 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4조제1항 관련)		
구분	대 상	일수	구분	대 상	일수
(생 략)			(현행과 같음)		
사망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	사망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5
(이하 생략)			(이하 동일)		

-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에 의하면(제17조)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·병가·공가·특별휴가로 구분하며, 서울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경조사 휴가, 불임치료휴가, 장기재직특별휴가 등이 있음.(참고자료 1참조).
- 지방자치단체 특별휴가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, 개정안은 자녀를 잃은 공무원을 위로하고, 실질적인 장례문화의 실소요일수를 충족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 - ※ 현재 17개 시·도의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경조사휴가 현황(참고자료 2 참조)을 살펴보면, 대전시의 경우에만 5일의 휴가를 시행하고 있음.
- 향후에도 서울시의 특성에 부합하고, 서울시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리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※ 행정국은 장례문화에서 현실적인 정서를 반영하고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○ 지방공무원법 제59조(위임규정)

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○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, 이 영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전문위원	김태한	입법조사관	김정덕
------	-----	-------	-----

참고 자료 1

지방공무원 복무규정·서울시 복무조례 특별휴가 비교

□ 특별휴가 현황 비교

-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따라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.

휴 가 종 류			휴 가 일 수	규정여부		
				복무규정	서울시 조례 (대상추가)	
특별휴가	경조사 휴가	결혼	본인	5일	0	0
		출산	자녀	1일	0	0
		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일	-	0
			배우자	5일	0	0
		입양	본인	20일	0	0
	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배우자	5일	-	0
		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일	-	0
	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배우자	3일	-	0
		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일	0	0 (그 형제자매의 배우자)
		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	1일	-	0
	여성보건휴가			매월 1일	-	0
	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			1일 1시간~2시간	-	0
	유산·사산휴가			임신기간에 따라 5~90일	0	0
	불임치료휴가			1일	0	0
	수업휴가			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일수	-	0
재해구호휴가			5일 이내	-	0	
장기재직특별휴가			재직기간 10~19년 10일, 20~29년 20일, 30년 이상 20일	-	0	
자녀입영휴가			군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 한해 입영당일 1일	0	0	
자녀돌봄휴가			재학중인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연 2일 이내	0	0	
성과우수자휴가			5일 이내	-	0	

참고 자료 2

17개 시·도 특별휴가(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) 비교

구분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(경조사 휴가)
서울	3
부산	3
대구	3
인천	3
광주	3
대전	5
울산	3
세종	3
경기	3
강원	3
충북	3
충남	3
전북	3
전남	3
경북	3
경남	3
제주	3

※ 각 시도 복무조례 특별 휴가 조항에 규정되어 있음.